

# 국방기술품질원 자체 시책개선 추진결과

1. 규정명 : 법인카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

2. 개선이유 :

내부청렴도의 향상 방안으로 법인카드 사용실적을 모든 부서원에게 공개함으로써 법인카드 집행에 대한 부서원의 의혹을 해소하고, **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**

3. 개선내용 :

현행	개정(안)	사유
제22조(관리대장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기관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매월말 기준으로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	제22조(관리대장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기관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매월말 기준으로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<b>부서원에게 공지 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&lt;추가&gt;</b> , 이를 해당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	* 업무추진비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 내역을 부서원에게 공지 또는 열람하게 함

4. 원 경영위원회 심의 : 62016-31차 원경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(정책기획실-1398)

5. 규정시행 근거 : 정책기획실-1401('16.7.29) 원규 제·개정 시행 전파